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 2023년 추계 이사회 결과 보고

■ 일시 및 장소: 2023.11.11.(토) 13:00~15:00 서울교대 연구강의동 713호

### 【진행 순서】

1. 회장님 인사
2. 각 부서별 안건 설명 및 토의
3. 차기 회장 인사 및 차기 임원단 구성 논의
4. 연구윤리교육 실시

## 【부서별 안건】

### 학술1국

#### 1. 2024년 연차 학술대회 준비

1) 주제 선정 논의

- 주제: 변화하는 학교 현장과 사회과교육
- 기조강연자: 교권·인권 문제 전문가, AI Digital 관련 전문가 등 섭외 추진

2) 장소 및 일시 선정 논의

- 장소: 한국교원대
- 일시: 2024. 01. 13(토) 12:30 ~ 17:30

### 국제학술교류사무국

#### 1. 제11 회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 일본전국사회과교육학회 연구교류회 보고

- 일시: 2023년 8월 25일(금)-8월 26일(토)
- 장소: 가고시마대학, 가고시마 일대
- 주제: “사회과수업에서 가르치기 어려운 테마를 가르치기”
- 참가인원 및 발표 현황 : 3명의 발표자, 1명의 토론자 포함 총 24명의 학회원이 참가함

- 발표1: 한국 사회과교사는 어떤 내용과 쟁점을 가르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가?  
(유종렬 (공주대학교))
- 발표2: 인구감소현상과 대책 -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면 좋은가? -  
(정태호 (용인성북초), 홍미화 (춘천교육대학교))

- 차기 제 12회 한일교류회는 한국에서 개최하고 모든 준비 과정과 경비는 본 회에서 부담하기로 한 내용을 확인함.

#### 2. 2023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국제학술교류회 안내

- 일시: 11월 17일 (금) 오후 4시 ~ 5시 30분
- 형식: 온라인 세미나

# 감정 그리고 시민교육

Emotion & Citizenship Education

## 초청 연사



Prof. Dr. Michalinos Zembylas  
(Cyprus Open University)

-민주시민교육, 다문화교육, 평화교육에 있어서 감정 및 정동의 역할에 대한 다수 논문과 서적 집필  
-"Emotion and Traumatic Conflict"의 저자

2023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KASSE) 온라인 국제학술 심포지움에서는 Michalinos Zembylas교수를 초청하여 '감정과 시민교육'이라는 주제로 함께 지식을 탐구하고 토론하며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이번 심포지움은 시민교육에서 감정에 대한 연구를 함께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는 훌륭한 장이 될 것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2023.11.17.(금) 16:00~17:30**

## 당일 일정

**16:00~16:05** 소개 히로시마대학교 교수 김종성

**16:05~16:35** 강연 동시통역

**16:35~17:00** 토론 KASSE 공부모임

**17:00~17:25** 질의응답

**17:25~17:30** 정리

## zoom 참가 등록

<https://url.kr/7np6i8>

## 누리집

<https://sites.google.com/view/kasse23iac>

## 주최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 공동 주최

한국교원대학교 인문사회과학교육연구소  
International Social Studies Association

## 1. 학회 홈페이지 개선 작업 결과 보고



- 본 학회의 영문 명칭이 현재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Social Studies Education”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홈페이지, 학회지, 각종 행사에서 사용되고 있음. 차기 총회에서 학회 공식 명칭을 “the”를 삭제한 “Korean Association for the Social Studies Education”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상정하기로 함.

## 2. 학회보 발간 예정

- 시기: 2023년 12월말
- 학회원 동정, 저서 발간, 수상 실적 등에 대한 정보 공유 부탁드립니다

## 3. 학회 운영 및 비용 관련 논의

- 학회가 법인이 아닌 관계로 학회 통장 및 자산 관리를 운영사무국장이 개인적으로 맡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소득세, 학회지 인세 소득에 따른 세금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사무국장이 개인적으로 감당해 왔음. 이 중 종합소득세 내역으로 개인에게 정확히 고지되는 인세 소득에 대한 비용은 학회비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학회지 인세 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를 학회비에서 지출하기로 의결함
- 매 해마다 연회비보다 이사회비 납부 비율이 하락 추세에 있으므로 수납 협조 요청함
- 학술대회 참가비 인상 논의: 현행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함

## 회장단

### 1. 차기 임원단 (2024.01.01. ~ 2025.12.31.) 구성 논의

- 관행에 따르면 현 학회장 임기가 종료되는 추계이사회에서 현 수석부회장을 차기 학회장으로 승인하고 차기 임원단 구성은 차기 학회장에게 일임해 왔음
- 이러한 방식은 차기 학회장 개인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는 방식이며 뒤이어 매년 1월 초에 개최되는 연차대회 준비가 시급해지는 문제가 발생해 왔음
- 이에 2024년 1월에 임기를 시작하는 차기 임원단 구성에 관한 논의를 추계 이사회에서 진행하고 추후에도 이러한 절차를 유지할 것을 의결함

#### < 차기 임원단 구성 논의 >

- 수석 부회장이었던 김영석 부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총회에 추천하기로 함
- 부회장 중 홍미화 부회장을 차기 수석 부회장으로 총회에 추천하기로 함
- 편집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유종열 편집위원을 차기 편집위원장으로 선출함
- 부회장단의 확대 필요성, 각국 국·차장급 임원구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차기 회장단에서 총회 제출안을 준비하기로 함

\*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2022년 5월 개정본) 중 “취약한 연구대상자 보호”

## 02 취약한 연구대상자 보호

### 1) 취약한 연구대상자란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나요?

- 취약한 환경의 연구대상자란 해당 연구의 연구자와의 관계, 대상자의 심리적, 물리적 상황 등으로 인하여 자발적 연구 참여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말합니다.
- 취약한 연구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데는 다음의 예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취약한 환경에 있는 시험대상자

“취약한 환경에 있는 시험대상자”(Vulnerable Subjects)란 임상시험 참여와 관련한 이익에 대한 기대 또는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조직 위계상 상급자로부터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자발적인 참여 결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의과대학·한외과대학·약학대학·치과대학·간호대학의 학생, 의료기관·연구소의 근무자, 제약회사의 직원, 군인 등을 말한다), 불치병에 걸린 사람, 제27조에 따른 집단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 실업자, 빈곤자, 응급상황에 처한 환자, 소수 인종, 부랑인, 노숙자, 난민, 미성년자 및 자유의사에 따른 동의를 할 수 없는 대상자를 말한다.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의 [별표 4]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 취약한 연구대상자는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더라도, 해당 정보를 이해하고 판단하는데 문제가 있거나, 강압이나 부당한 영향을 받아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어 적절한 참여 동의를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취약한 연구대상자는 다른 연구대상자들과 동일한 연구 환경에 노출되더라도 취약성으로 인해 더 높은 위험에 처하거나 더 많은 부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취약한 연구대상자가 참여할 때에는 대상자에게 이익이 있는지, 연구 참여의 자율성이 확보되었는지, 예상되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등에 더욱 주의하여 취약한 연구대상자들이 특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연구를 설계하여야 합니다.

## 2) 대리인의 동의란 무엇입니까?

- 미성년자 또는 치매환자 등과 같이 연구대상자가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 연구대상자를 대신하여 연구 참여 유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 생명윤리법 제16조(인간대상연구의 동의)

② 제항에도 불구하고 동의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대상자가 참여하는 연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대리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의 동의는 연구대상자의 의사에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1. 법정대리인
2.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하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여러 사람일 경우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연장자가 대리인이 된다.

-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대상자”란 만 18세 미만인 사람 또는 그 밖의 대리인의 서면동이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14조)
  - 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대리인의 의사가 연구대상자의 의사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생명윤리법 제16조 제2항 후문)

## 3) 미성년자 경우(만18세 미만)

- 미성년자의 경우(만18세 미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연구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부모)으로부터 동의를 취득해야 하지만, 미성년자가 이해능력이 있다면 법정대리인 동의 외에 본인의 동의도 함께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